
- 2017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17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4개부서		18개 사항	주의 9 시정 8 권고 1	추징 환수	2,100,870 320,000	
1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210,000	
2	○○○○○	201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	2016~ 2017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4	○○○○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550,000	
5	○○○○ ○○○○	2016~ 20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6	○○○○ ○○○○	2016~ 2017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주의			
7	○○○○ ○○○○	2015~ 2017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237,604	
8	○○○○ ○○○○	2017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9	○○○○ ○○○○	2015~ 2017	공공 유류 구매방법 개선	권고			
10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50,000	
11	○○○○○○○	2016~ 2017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주의			
12	○○○○○○○	2015~ 2017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240,264	
13	○○○○○○○	2017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14	○○○○○○○	2016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320,000	
15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590,000	
16	○○○○○○○○○	2016~ 2017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주의			
17	○○○○○○○○○	2015~ 2017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123,002	
18	○○○○○○○○○	2017	계약대가 지급 시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1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5건					미소화 210 초과소화 55
2016.06.29	2016년 **** 유지관리	****	2,500	35	60	-25
2016.06.30	***** 정화조 청소	****(주)	1,080	25	0	+25
2016.10.19	하반기 *.* 수조 청소	*****공사	1,210	30	0	+30
2016.12.07	**** 구입	***	1,056	0	15	-15
2017.04.07	*** **** 교체공사	****	6,930	0	170	-17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불임의 현황과 같이 ‘2016년 ** **** 유지관리’ 외 4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1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1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2016.09.1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추석맞이 직원선물 구입	253,440

나.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2016.12.28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회식	800,000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집행 품의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업무추진비 공통,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 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

그런데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가. 업무추진비 집행과목 부적정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석맞이 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 초과

위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원회식」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4만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내역

지급일자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원)	징수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5건		1,050,000	31,200	3,120
2015.10.06.	은빛학교(*****)	***	150,000	6,000	600
	은빛학교(****)	***	150,000	6,000	600
	은빛학교(*****)	***	240,000	9,600	960
	은빛학교(****)	***	240,000	9,600	960
2015.12.10.	****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	270,000	-	-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 및 84조에 의하면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빛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정금액(25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4건 780,000원에 대한 세액 34,320원(소득세 31,200원, 지방소득세 3,12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고, ****기관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강사료 27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2에 따르면 청소업체와의 청소용역계약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냉장고 등 구입’ 외 총 11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120천원을 추가로 소화하고, 55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55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11건				미소화 550 초과소화 3,120	
2016.01.28	냉장고 등 구입	*****	3,150	3,150	45	+3,105
2016.09.12	*****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	1,171	-	15	-15
2016.12.09	*** 리모델링 공사	*****	9,498	200	235	-35
2012.12.15	***** ** 및 **** 보수공사	*****	36,689	860	915	-55
2012.12.22	사무용 의자 등 구입	****	1,000	-	15	-15
2012.12.29	*****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	1,159	-	15	-15
2017.04.28	*****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 엘레베이터	6,580	175	160	+15
2017.06.14	***** 내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	18,966	280	470	-190
2017.06.14	***** 내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	13,313	195	330	-135
2017.08.03	2017.7 ***** 점검비	*****	2,811	-	70	-70
2017.08.21	*****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	1,650	-	20	-20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연번	지급일자	통계목	집행내역	지급금액(원)
계			5건	4,247,000
1	2016.04.0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 직원 회식비	839,000
2	2016.05.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779,000
3	2016.07.0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814,000
4	2017.01.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975,000
5	2017.07.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840,000

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연번	원인행위일	집행품의일	통계목	집행내역	집행금액(원)
계				5건	2,883,000
1	2016.03.08.	2016.03.2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실 직원 회식비	839,000
2	2016.04.18.	2016.04.2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779,000
3	2016.05.27.	2016.05.29.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139,000
4	2016.08.07.	2016.08.08.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246,000
5	2016.08.16.	2016.08.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운영 협조단체 만찬	880,0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 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시 집행품의 승인 후 원인행위(카드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실 직원 회식’ 등 총 5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 경비의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원 회식비’ 등 5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 카드결제 후 사후 품의를 통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지급일	적요	수량	단가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4건			1,226,000		
2016.08.29	휴대용 무전기 구입	2	350,000	700,000	재료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016.08.29	무전기 수선	1식	154,000	154,000	재료비	사무관리비
2016.12.15	** 식기세척기 수리	1식	132,000	132,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2017.04.03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열풍기)	1	240,000	240,000	재료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소규모 용역제공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201-01)의 일반수용비의 마목에 따르면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료비(206)의 경우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총 4건 총 1,22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운 무전기, 열풍기 등을 구입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재료비로 지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37,604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 준 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237,604	
2017. 10. 18.	5585-****-****-****	83,887	BC TOP
2017. 10. 18.	9410-****-****-****	153,717	유류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 9월부터 2017. 10. 18.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237,604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적립된 237,604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카드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승낙사항 미기재)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서식 사용 부적정)	비 고
2017	15건	8건	7건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6장 제121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스템 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출” 등 총 15건 98,556,060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뒷면 승낙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현황(2017)

연번	지출일자 (계약일자)	적 요	지출금액	서식 종류	증빙구분	비 고
계		15건	98,556,060			
1	2017. 4. 26.	*** 진입로 철계단 및 인도난간 시설정비공사	11,425,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2	2017. 5. 9.	***** 조명 시설 및 ***** 분전함 교체정비공사	3,060,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3	2017. 5. 11.	*** ***** 펌프 수리,수선	1,614,000	수선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4	2017. 5. 15.	*** *** 시설 1구간 보수공사	18,999,2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5	2017. 5. 15.	*** *** 시설 2구간 보수공사	18,074,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6	2017. 5. 19.	2017년 5월 1차분 *** ***** 수수료	3,678,26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7	2017. 5. 29.	** 관광객 유치 홍보용 리플렛 제작	6,840,000	구입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8	2017. 5. 31.	***** 내 안내 표시물 교체공사	13,313,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9	2017. 5. 31.	***** 내 안내 표시물 교체공사	18,966,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승낙사항미기재)
10	2017. 6. 12.	***** 내 화장실 분뇨 수거료	150,000	일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11	2017. 6. 13.	화장실 방향제 및 용품 구입	448,800	일반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구입지출결의서)
12	2017. 8. 3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우의 구입	405,000	구입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일반지출결의서)
13	2017. 9. 6.	생수 구입	210,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구입지출결의서)
14	2017. 9. 11.	화장실 방향제 구입	448,8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구입지출결의서)
15	2017. 9.13.	***** 프린터토너 구입	924,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사용부적정 (구입지출결의서)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공유류 구매방법 개선

【위법·부당내용】

1. 유류(경유) 구매 현황

(2017.10.17일 기준)

주유소명	위 치	***** 거리	경유단가(L)	비 고
주유소	삼척시 *	24km	1,290원	유류공동구매 지정 주유소
주유소	삼척시 *	8km	1,299원	

2. 내 용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의 구매력(Buying Power)을 통합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유가 인하를 유도하여 예산 절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기관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카드 제도를 2013. 12. 1일부터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2만리터 이하)유류에 대하여 '13.12.1~'15.11.30까지 ** ***(주)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조달청에서는 ** ***(주)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 ***(주)를 신규 공급자로 선정하고 '15.12.1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주) (‘13.12.1~’15.11.30)	** ***(주) (‘15.12.1~’18.11.30)	비 고
할인율	3.99%	5.74%	
Cash Bag	1.1%	1.1%	
계	5.09%	6.84%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차량 유류를 주유하기 위하여 ***(주)에서 약 24km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류 공동 구매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13.12.1부터 급유하여 왔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주유소 유류단가에 할인율을 적용(캐시백 포함)하면 **주유소 보다 약97원 절감되나 ** 산타페 차종 연비(1L당 8km)를 환산하면 **주유소에서 **주유소까지 왕복 32km에 소요되는 유류(경유)비 5,160원과 차량유지비 증가, 인건비등이 소요되므로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에 따라 주유소 부재 등 긴급한 사정에 따라 주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소재 주유소와 단가계약을 체결 주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5건					미소화 150 초과소화 35
2016.09.05.	*** 화장실 청소	(유)*****	1,500	35	-	35
2016.12.27.	***** **대행 수수료	***** *****(주)	1,140	-	25	-25
2017.01.06.	사무실 바닥재 교체공사	*****	5,640	65	140	-75
2017.03.10	화장실 청소에 따른 물품 구입	(유)*****	1,385	-	20	-20
2017.04.03.	2017년 ***** **대행 수수료	***** *****(주)	1,351	-	30	-3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2에 따르면 청소업체와의 청소용역계약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화장실 청소’ 등 총 5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5천원을 추가로 소화하고, 15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5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지급일	적요	수량	단가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3건			9,650,000		
2016.10.20.	*** 사물함 및 수납함 구입	1개	450,000	450,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6.2~12월	***** 화재안전 관리용역	10월	200,000	2,000,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7.03.13.	***** ***** 단체복 구입	24개	300,000	7,200,000	행사실비 보상금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소규모 용역제공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201-01)의 일반수용비의 마목에 따르면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료비(206)의 경우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실비보상금(301-09)의 경우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사물함 및 수납함 구입’ 등 총 3건 총 9,650,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40,264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 준 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240,264	
2017. 10. 24.	5585-****-****-****	66,486	BC TOP
2017. 10. 24.	9410-****-****-****	173,778	유류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 10. 18.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240,264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적립된 240,264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카드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승낙사항 미기재)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서식 사용 부적정)	비고
2017	16건	2	14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6장 제121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구입” 등 총 16건 9,259,500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뒷면 승낙 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계약일자)	적 요	지출금액	서식 종류	증빙구분	비 고
	계	16건	9,259,500			
1	2017.2. 2.	***** 구입	198,000	일반	영수증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2	2017. 3. 7.	**** 태극기 및 시기 구입	980,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3	2017. 3. 7.	*** 냉온수기 소독	66,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4	2017. 3. 7.	***, *** 냉온수기 소독(1분기)	88,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5	2017. 3.10.	화장실 청소에 따른 물품구입	1,380,5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6	2017. 3.23.	1분기 ** 소독비	300,000	일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7	2017. 3.22.	*** 안내 명찰 제작	360,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8	2017. 5.29.	2분기 ** 소독비	300,000	일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9	2017. 6. 1.	***** 청소용품 구입	440,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10	2017. 6. 7.	냉온수기 소독비	88,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용역지출결의서]
11	2017. 6.22.	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	163,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12	2017. 6.28.	*** 생수 구입	220,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13	2017. 7.14.	***** 출입문 시건장치 구입	374,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14	2017. 7.14.	*** 시설물 유지보수재료 구입	1,900,000	구입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뒷면승낙사항미기재]
15	2017. 7.26.	***** 복사기 액정화면 교체	532,000	일반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구입(물품)지출결의서]
16	2017. 8.16.	** 시설물 보수공사	1,870,000	공사	전자세금 계산서	지출결의서부적정 [뒷면승낙사항미기재]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32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제*회 ***** 아트페스티벌 참석	*** *** *** *** ***	2016.06.12 ~ 06.16	제주	3,110,000	2,710,000	400,000	4박 5일

※ 퇴직자(***) 제외한 4명 추정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숙박비는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제*회 ***** 아트 페스티벌 참석'에 따른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출장여비(숙박비)를 1박당 70,000원으로 산정, 정당액보다 4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 지급한 320천원을 환수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9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590
2016.06.13	*** 마을***** 시스템 원가계산용역	(재)**** *****	1,040	-	25	-25
2016.06.28	**** 농어촌마을***** 관급자재 구입(***** 시스템)	(주)*** *****	36,900	-	550	-550
2017.06.12	2017년 *****구역 배수로공사	****(주)	48,760	1,200	1,215	-1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마을***** ***** 시스템 원가계산용역’ 등 총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59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59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

(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소규모 용역제공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으로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금,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비(401-01)의 경우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붙임의 현황과 같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총 29건, 1,95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회계구분	지급일자	적 요	금액	지출 통계목	적정 통계목
계		29건	1,955,000		
일반회계	2016-01-27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공사)	30,000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4-26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지출(2016년3월분)	8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4-26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2016년 3월분)	1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5-24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4월분)	1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5-24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4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5-24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4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5-24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4월분)	3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6-28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2016년 5월분)	1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6-28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지출(2016년 5월분)	4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6-28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2016년 5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6-28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2016년 5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8-22	** ***** ** **차량 임차용역	605,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8-26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지출(2016년 7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9-27	나라장터 수수료(**지역 **** 정비 공사 ****용역)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09-27	8월 나라장터 수수료지급	3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6-12-27	나라장터 이용수수료(11월분)	5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특별 회계	2016-05-24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4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특별 회계	2016-08-26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지출(2016년 7월분)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1-24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4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3-23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3-28	2016년 ***** 관리대행 **** 평가위 원회 수당	600,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4-19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7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4-19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1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5-17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6-16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6-16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삼척시 ** 마을***외 2개소 시설개선공사)	3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7-18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인근 *****공사)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2017-08-24	나라장터이용수수료(*****정비공 사)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특별 회계	2017-05-17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2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23,002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 준 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123,002	
2017. 10. 31.	5585-****-****-****	51,108	BC TOP
2017. 10. 31.	9410-****-****-****4 9410-****-****-****7	71,894	유류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7. 10. 30. 감사일 현재 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총 123,002원(BC TOP 가맹점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 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카드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 대가 지급 시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 도	건 수	금 액(원)	비 고
2017	20	1,925,753,000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1항에 따르면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1항에 따르면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구역 배수로공사” 등 총 20건 1,925,753,000원을 공사 및 용역, 물품(관급자재) 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징구 등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계약 대가 지급 시 계약에 따른 관련 법규 등에 의거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가 지급 시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현황(2017)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채권자)	지출금액 (원)	계약 유형	비고
합계		20건				
1	2017.3.15.	2017년 *****구역 배수로공사	****(주)	30,000,000	공사	선금
2	2017.3.17.	**** 농어촌마을 *****공사 공법사 관급기자재 구입	(주)***	194,600,000	공사	선금
3	2017.3.24.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전기공사	**주식회사	25,650,000	공사	선금
4	2017.3.24.	2017년 *****구역 주민지원사업	(주)**	16,919,000	공사	선금
5	2017.3.28.	2017년 *****구역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주)**	26,000,000	공사	선금
6	2017.3.28.	2017년 *****구역 주민지원사업	****(주)	31,000,000	공사	선금
7	2017. 4.6.	삼척 *****시설 정밀점검	*****	13,365,000	용역	준공금
8	2017.4.27.	*** **통(***) 소규모**** 물탱크 철거공사	*****	10,345,000	공사	준공금
9	2017.5.10.	소규모 ****처리시설 PLC 보호용 피뢰침 설치공사	(주)****	16,720,000	공사	준공금
10	2017.5.12.	** 마을*** 시설개선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주)**	20,445,000	용역	준공금
11	2017.5.18.	*** ** *반 소규모**** 물탱크 교체공사	(주)**	10,172,000	공사	유·회·간 경과
12	2017.5.24.	** 마을****시설 기술진단 용역	(주)*****	10,560,000	용역	준공금
13	2017.5.24.	** 마을****시설 기술진단	(주)*****	10,560,000	용역	준공금
14	2017.5.29.	*** **** 소규모**** 개량공사 (관급 플렉스파이프)	(주)*****	73,392,000	관급 자재	완납금
15	2017.5.30.	삼척시 ** 마을*** 외 2개소 시설개선공사	****(주)	90,000,000	공사	선금
16	2017.5.31.	2017년 삼척*****구역 주민지원사업 관급 (***안내판)	****	10,469,000	관급 자재	완납금
17	2017.6.14.	**지역 **** 정비공사 ****용역	(주)**** 엔지니어링	26,945,000	용역	준공금
18	2017.6.16.	****지구 **** 정비공사	(합)****	62,785,000	공사	준공금
19	2017.6.26.	*** ** 소규모**** 개설공사 (관급 플렉스파이프)	(주)*****	83,216,000	관급 자재	완납금
20	2017.6.29.	**지역 **** 정비공사(4차분) 준공금	(주)*****	1,162,610,000	공사	준공금